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5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금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4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2조)
-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유공납세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방세’,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유공납세자 대상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이면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우대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서면 안내에 대해 규정하고

-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 안 제4조에서는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함. (타 자치구 사례는 붙임2 참조)
 -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유공납세자의 명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실 지방세 납부자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